

구미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6.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 및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의 범위를 정함
(안 제3조)

다.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 내용 규정(안 제4조)

라. 노사민정 활성화와 노동단체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 향상 도모를 위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5조)

마. 보조금신청 및 정산보고 절차 규정(안 제6조)

바. 포상에 대한 내용 규정(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민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구미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 및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 및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대상) 시장이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각종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원할 수 있는 기관·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지역조직
2.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지원대상으로 의결된 노동 관련 단체
3. 경영자 총협회, 농공단지 관련 단체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제4조(사업 및 예산 지원 등) 시장은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 및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근로자의 날 관련 행사
2. 근로조건 개선, 노사관계 고충처리 및 노·사 안정을 위한 노동상담 사업 운영
3. 노사발전을 위한 노동정보지원 사업 운영
4. 노사민정협력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 운영
5.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문화행사, 걷기대회, 등반대회 등 화합행사
6. 노동단체 간부 및 조합원에 대한 교육, 연수, 세미나 등 활동사업
7. 근로자 국내·외 노동현장 및 산업연수
8. 산업재해예방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업
9. 그 밖에 노사관계 발전,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 및 고용유지·창출, 노동조합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노사민정 활성화와 노동단체의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4조에 관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조의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와 관리·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포상) 시장은 기업에 근무하면서 노사화합 및 상생 분위기 조성으로 생산성 향상과 근로조건 개선, 일자리 창출 등에 적극 기여한 노동자,

기업, 기업인, 노동조합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미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노사의 자치가 강화되고 노사 협력적 관계가 정착·발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노사관계 발전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노사정 협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3.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컨설팅에 관한 사항
4. 사업장의 고용·임금체계 개선 등 작업장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에 관한 사항
6. 노사협력 우수기관·단체 또는 유공자 포상 등 노사협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7.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홍보·캠페인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역 노사민정"이라 한다)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 및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등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표창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구미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 및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사업비 지원으로 세출발생(안 제4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2016년도 세출예산 추계비용

- 가. 노동단체 화합다짐 체육대회 30,000천원
- 나. 미노조기업 모범근로자 힐링프로그램 운영 30,000천원
- 다. 농공단지 근로자 한마음대회 20,000천원 보조금 신청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년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됨

<2015년도 세출예산>

- 가. 노동단체 화합다짐 체육대회 28,500천원
- 나. 미노조기업 모범근로자 힐링프로그램 운영 27,000천원
- 다. 농공단지 근로자 한마음대회 12,350천원 지원

4. 작성자

노동복지과 노사정책계장 박만용 (054-480-6201)

노동복지과 행정 7 급 김완수 (054-480-6202)

소관 실·과		노동복지과
입 안 자	과 장	남 동 수
	담 당	박 만 용
	담 당 자	김 완 수 (480-6202)